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I. 감사의 목적

-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케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의 실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실현에 역점

※ 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5
-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I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기간 : 2002. 7. 27 (1일간)
2. 감사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3. 감 사 반 :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의원(5명), 전문위원, 보조2명
4.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비 고
7. 29(토)	오 전	• 의회사무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오 후		

5.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위원장)
- 피 감사 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의회사무과장)
- 추가자료 요구
- 질의답변
- 감사종료 선언

III. 감사결과 처리의견

- 지적사항 없음.

2002. 7

2002년도 총무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기 간 : 7. 22 ~ 7. 28(7일간)
- 상 소 : 총무 위원회 회의실,
5개 읍면 회의실
- 대 상 : 군 본청, 5개 읍면

총 무 위 원 회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I. 감사의 목적

-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시정케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의 실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실현에 역점

※ 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5
-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I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기간 : 2002. 7. 22 ~ 7. 28(7일간)
2. 감사장소 : 총무 위원회 회의실, 수감기관 회의실
3. 감 사 반 : 총무위원회 소속의원(6명), 전문위원, 보조2명
4.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비 고
7. 22(월)	오 전	•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오 후	•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질의답변	
7. 23(화)	오 전	•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오 후	•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질의답변	
7. 24(수)	오 전	• 환경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오 후	• 환경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질의답변	
7. 25(목)	오 전	• 도곡면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오 후	• 도암면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7. 26(금)	오 전	• 이서면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오 후	• 북면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7. 27(토)	오 전	• 화순읍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7. 28(일)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5.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위원장)
- 피 감사 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실과소장, 피감사 기관장)
- 추가자료 요구
- 질의답변
- 현장확인
- 감사종료 선언

Ⅲ. 감사결과 처리의견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본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은 잘못 추진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③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상기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군수 지시사항 이행 철저 (군.읍.면 공통)

- 공직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여론이 있음. 군수부재시 부군수를 중심으로 더욱 열심히 군정을 챙겨야 할 것임. 특히 민원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고 아울러 부군수 지시사항 등도 더욱 더 철저히 챙겨야 할 것임.

② 국도비등 신청시, 의회와 사전협의 해야할 것 (기획감사실)

- 2003년도 국도비등의 신청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되지 못했음. 사업의 경중, 국도비의 예산에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사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임.

③ 과소 리(里) 정비 (총무과)

- 2001년도 지적사항임.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이므로 이미 지적된 데로 과소 리의 통.폐합을 2002년도 하반기까지 끝내기 바람.

④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독 철저 (총무과)

- 특정 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지양되어,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바람.

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조치 (총무과)

- 지난 7년간 인사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음. 새 군수체제 하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할 것이 요구됨. 시정되지 않는다면 의회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임.

⑥ 지나친 포상은 자제할 것 (총무과)

○ 지난 1년간 군수표창이 총 544건이 있는데, 지나치게 많아, 포상의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군민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꼭 필요한 경우로 한하여야 할 것임.

⑦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통폐합 (총무과)

○ 평균회의시간이 2시간 미만이 많고, 비슷한 내용 및 구성원이 많으므로 회의 시간이 짧고, 유사 내용, 유사 구성원인 위원회 중심으로 통폐합할 것.

○ 소수의 민간인이 다수(3개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보다 폭넓은 군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참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3개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에 대해 재정 비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이 여전히 낮음. 각 실과와 협조하여 여성참여 비율을 상향 시켜야 할 것임.

○ 활동과 실적이 없고 자체 정기회의에서 승인되지 않은 사회단체의 장이라는 직함으로 수년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회단체의 장이 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단체회의록 등을 점검한 후 위촉할 것.

⑧ 면지역에 대한 세무관련 대책을 세울 것 (재무과)

○ 면의 재무계가 폐지됨에 따라 세무관련 민원을 보기위해 군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이 있음. 면지역에 세무전담직원을 두는 등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군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⑨ 민원안내 철저 (종합민원과)

○ 종합민원과 사무실 입구의 민원 안내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본래의 목적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도록 할 것.

⑩ 복합민원 처리대장 관리철저 (종합민원과)

○ 2개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민원 처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⑪ 여론 모니터 요원 정비 및 활용만전 (종합민원과)

○ 여론 모니터 요원을 재정비하고 여론 모니터 요원들간의 정례적인 회의개최등 여론 모니터 요원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 편익증진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모니터 요원들을 적극 활용할 것.

⑫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업소 관리철저 (종합민원과)

○ 정기적인 지도단속실시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⑬ 민사무소 주차공간 확보 (도곡면)

○ 도곡면사무소 정문앞 편도2차선이 주차장으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데, 민사무소 관련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조속히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 및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를 하여 면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람.

⑭ 주요 공문은 회람할 것 (화순읍)

○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사고가 늘고 있어 2002.1.2 인감사고발생알림 보고 공문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람하지 않은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아울러 앞으로도 전 직원이 공유해야될 중요 공문의 경우, 반드시 회람하여 주시길 바람.

⑮ 이장 등의 지역내 주요 직책 겸임 제한 (화순읍)

○ 이장이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을 겸하거나, 이장의 처가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사례가 있음. 되도록 다수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위해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새롭게 정비하여 주시길 바람.

⑯ 사무소내 민원인 주차대책세워, 실행할 것 (화순읍)

○ 사무소 주차공간이 30대분인데, 직원차량이 28대이다. 직원 및 민원인을 위한 장기적인 주차대책을 세워 실행하여 주길 바람. 필요하다면 주변 사유지 등을 매입 또는 임대하는 것도 검토하길 바람.

⑰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고발 처분할 것 (화순읍)

○ 광주지역의 불법광고물들이 읍내 여기저기에 붙어 있음.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불법광고물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것.

2. 건의 사항

- 본 건의사항은 감사결과 우리군 의회의 의견으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이므로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 검토하여
-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한후 시행하기 바람.

① 지방세 체납 징수 및 수익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 (재무과)

- 현재 23억원에 이르는 체납액이 존재. 군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에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도곡온천조합의 종합온천장 부지에 대한 지방세 징수에 노력하며 아울러 군차원에서 이 부지를 인수하여 시설하는 것도 고려할 것.

② 무인증명 발급기 활용을 위한 홍보 및 확대보급 (종합민원과)

- 신속한 증명 발급을 위해 무인증명 발급기를 활용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다수인이 모이는 공공기관이나 농협등 단체 사무실등에 설치희망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③ 종합 이동 민원실 운영 철저 (종합민원과)

- 종합이동 민원실 운영에 있어 오지 마을등 주민의 불편이 많은곳을 선정하여 개척토록 하고 주민의 호응도가 높다고 하니 개척횟수를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람.

④ 화순 공설 운동장의 계획성있는 사업추진철저 (문화관광과)

- 화순공설운동장 시설에 대해 장기 발전적인 측면에서 시공에서부터 향후 활용계획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 투입등 활용이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⑤ 도곡온천 관광개발 활성화 방안강구 (문화관광과)

- 도곡온천수량 부족에 따른 문제 해결 및 관광지 주변 정비 사업추진등 전반적인 온천 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⑥ 학교체육 육성 보조금의 실정에 맞게 적정 배분 (문화관광과)

○ 학교 체육육성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일괄지급방식이 아닌 학교별 경기실적 등을 참고하여 경기력과 인원수에 맞춰 적정배분 지원토록 하기 바람.

⑦ 군민의 상 수상대상자 공모 홍보철저 (문화관광과)

○ 군민의상 수상자 공모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⑧ 성년의 날 군 자체행사 개최방안 검토 (문화관광과)

○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성년이 되는 군민들에 대한 군 자체 행사 계획을 검토해 보기 바람.

⑨ 운주축제행사 신문 광고료의 균형 배분방안 강구 (문화관광과)

○ 운주축제 행사개최 홍보를 위한 신문 광고료가 신문사별로 균형배분되지않아 불만이 있다고 하니 균형 배분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⑩ 공설 운동장 사용조례 제정 추진 (문화관광과)

○ 공설운동장 사용 조례를 제정하여 준공과 동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람.

⑪ 여성회관 건립 방안강구 (사회복지과)

○ 여성들의 교양강좌와 특기 취미활동 공간 마련등 여성 우대차원에서 여성회관 건립 방안을 강구하되 공설운동장의 다목적 시설 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기 바람.

⑫ 환경오염신문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환경과)

○ 환경오염신문고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주민의 인지도가 낮다.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경각심고취를 위해 군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문고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요망.

⑬ 사이버전자민원 관리철저 (군.읍.면 공동)

○ 일부 실과에서는 사이버전자민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함. 선실과가 사이버민원에 대한 적극적이며 빠른 응답을 제공하며 아울러 민원

관리대장을 철저히 챙기시길 바람.

⑭ 조속한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완료 (환경과)

○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2005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계속되는 상수도 누수량을 고려하면 조속히(2003년) 노후관개량사업이 완료되어 불필요한 상수도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⑮ 주요 환경관련 민원 및 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것 (환경과)

○ 동북에 설치되는 쓰레기매립장은 최첨단 매립장이 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동북쓰레기매립장 설치과정에 지역은 물론 의회가 소외되었는데, 추후에는 환경관련 민원 및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가져할 것.

⑯ 반상회 운영 철저 (주민자치과, 읍.면공동)

○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음. 주민들 상호간 및 읍면과의 정보의 교류 및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면장 및 지역 의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읍면 공동적으로 직원의 부족으로 인해 반상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하니, 군 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대책 강구 (주민자치과)

○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요망.

⑱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민원해소 노력 요망 (보건소)

○ 관내에 독감예방접종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어 사전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한 백신을 구비하시길 바람.

⑲ 온천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검토 (도곡면)

○ 도곡온천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검토하시길 바람. 도곡온천지역은 광주시 남구와 맞붙어 있어, 광주시민 입장에서는 화순관련 민원을 보시기 좋고 아울러 화순군입장에서는 온천 이용객을 늘릴 수도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됨. 아울러 온천 인근 주민들의 행정민원 편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입지는 온천사무소 또는 필요하다면 호텔 등과 협조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임.

⑩ 도곡중앙초등학교 및 도곡초등학교 통합문제에 관심을 (도곡면)

- 양교의 통합문제가 도곡교육계의 현안이며 아울러 화순군 입장에서 도 세계유산화순고인돌군 시설지구의 입지 문제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임. 의회 뿐만 아니라 면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⑪ 지식천 주변공원 개설 및 달아실마을 민속마을 지정 검토 (도곡면)

- 도곡면 죽청리-덕곡리에 걸친 지식천 주변에 주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길 바람.
- 고인돌군유적지 인근인 달아실마을을 민속마을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길 바람.

⑫ 의회에 대한 관심제고 노력요망 (전 읍.면)

- 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의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문제를 각종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며,
- 지방자치가 된지 11년이 되었지만 의회에 방청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음. 방청을 적극 유도하며 아울러 의회 회의록에도 관심을 갖길 바람.

⑬ 영세민 아님 영세민 자녀에 대한 지원 노력 (전 읍.면)

-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아울러 영세민 아님 영세민 가정의 자녀가 주변에 많아, 이들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있음.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우시길 바람.

⑭ 방역철저 (이서면)

- 고온다습한 장마철이다. 어느 때보다도 방역의 중요성이 높은 때이다. 더욱 방역에 철저 요망.

⑮ 주민정보이용실이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이서면)

- 수강자에 대한 실적이 있지만, 누가 강의했다는 기록은 없다. 수준에 맞는 주민교육, 공무원교육 등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 실질적인 주민의 정보이용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26 저수지신설, 군도16호선 확포장, 딸기, 표고버섯, 녹차재배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검토 (북면)

- 북면의 당면과제로서 노치지구 및 용천지구 등 2개소의 저수지 신설, 북면을 관동하는 군도16호선의 확포장문제, 쌀에 대한 대체작목으로서 딸기, 표고버섯, 녹차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을 검토바람.

27 이장의 세대교체 필요 (화순읍)

- 마을 이장을 10년이상 계속 맡는 사례가 상당수 있음. 보다 젊고 개혁적이며 활동적인 이상으로 교체가 요망됨.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길 바람.(사녀학자금 지원등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적극홍보 요망)

28 내고장학교 보내기 캠페인 검토 (읍.면공통)

- 실제 광주와 실력차가 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주등 인근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군이나 읍면차원에서의 내고장학교 보내기운동을 학교, 교육청, 군 등과 공동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음. 마을 반상회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9 귀농자에대한 지원 강화 (화순읍)

- IMF이후 귀농자가 늘었지만, 현재의 어려운 농촌현실로 인해 다시 농촌을 떠나가고 있음. 귀농자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대책수립 요망.

30 인감증명발급중 위임 발급시, 특히 주의를 기울려야 할 것 (읍.면공통)

- 광주 등에서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여 공무원인 개인은 물론 자치단체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 특히 읍면의 경우 서로 번식이 있어 위임발급의 경우에도 본인의 진정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위임발급시 특히 주의 요망.

2002. 7

2002년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기 간 : 7. 22 ~ 7. 28(7일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읍·면 회의실
- 대 상 : 군본청, 읍면

산 업·건 설 위 원 회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I. 감사의 목적

-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시정케 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의 실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실현에 역점

※ 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5
-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I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기간 : 2002. 7. 22 ~ 7. 28(7일간)
2. 감사장소 :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실, 읍면 또는 수감기관 회의실
3. 감 사 반 : 산업·건설 소속의원(6명), 전문위원, 보조2명
4.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비 고
7. 22(월)	오 전	•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오 후	•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질의답변	
7. 23(화)	오 전	• 건설과, 도시경제과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 건설과, 도시경제과 질의답변	
	오 후	• 한천면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7. 24(수)	오 전	• 능주면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오 후	• 춘양면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7. 25(목)	오 전	• 이양면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오 후	• 청풍면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7. 26(금)	오 전	• 동북면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오 후	• 동면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7. 27(토)	오 전	• 남면 업무보고 및 자료요구 질의답변	
7. 28(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5.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위원장)
- 피 감사 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성과소장, 읍면장 피감사 기관장)
- 추가자료 요구
- 질의답변
- 감사종료 선언

Ⅲ. 감사결과 처리의견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본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은 잘못 추진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③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상기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불법농지전용토지 사후관리철저 (농산과)

- 불법농지전용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일관성있게 지시할것.

② 가축방역약품 구입 철저 (농산과)

- 가축방역약품을 구입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통해 구입 할 수 있도록 할것

③ 관광농원을 목적으로한 농지전용허가지 사후 지도감독철저 (농산과)

- 관광농원을 목적으로 농지 전용을 한후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바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

④ 친환경 농업 신청자 관리 철저 (농산과)

- 친환경 농업실천 농가를 도암면에만 일방적으로(132건 중 127건)신청된 읍면의 홍보 부족으로 밖에 볼수 없음.

⑤ 부설 주차장의 기계식 주차기 점검 및 관리감독 철저 (건설과)

- 기계식 주차기의 현황이 맞지않고 안전도 검사 또한 기계가 없어서 못받는데도 적법하게 받는것처럼 보고 하였는데 선반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불법 주차등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할 것이며 실제 소유자도 정비가 되지 않는등 성의가 부족함.

⑥ 고용촉진 훈련 위탁관리 지도감독 철저 (도시경제과)

- 일부 훈련생들이 적반 학원에 두고 학원을 다니지 않고 교통수당등을 지급받는 사례가 있다하니 고용촉진 훈련생들의 위탁 관리에 철저을 기할것.

2. 건의 사항

- 본 건의사항은 감사결과 우리군 의회의 의견으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이므로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 검토하여
-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한후 시행하기 바람.

① 영농법인 활성화 방안강구 (농산과)

- 영농법인 활성화로 농산물 제값받기를 적극추진할 것.

② 오리농법 활성화 방안강구 (농산과)

- 오리 농법으로 인한 오리 판매대책에 대하여 사전 관심을 기울일것.

③ 원예용 관정개발 공동사용 방안 강구 (농산과)

- 원예용 관정을 개발할 때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 할것.

에 : 현재는 개인용 관정처럼 사용되고 있음.

④ 산림형질변경 복구지 관리철저 (산림과)

- 산림형질변경 복구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할것.

⑤ 임도시설 하자보수 기간내 정기점검을 철저히 할 것 (산림과)

- 임도시설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므로 하자보수 기간내 점검을 철저히 할것.

⑥ 도시가스 공급 일반수용가 조기공급 (도시경제과)

- 도시가스를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용가에 조기 공급될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⑦ 군정업무 추진관련 마을 방송홍보 강화 (한천면)

- 군정 업무를 주민들이 상세히 알수 있도록 담당 마을직원으로 하여금 방송안을 작성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직원들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⑧ 공익 근무요원 관리철저 (능주면)

○ 공익요원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근무 규칙을 위반하면 즉각 의법 조치할 것.

⑨ 외국인 근로자 관리철저 (능주면)

○ 우리군 농공단지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것.

⑩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서 작성소홀 (능주면)

○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이 유일하게 1건도 없는 성의 없는 보고서가 작성 되었는데, 업무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⑪ 저소득층 자활사업 현황관리 철저 (능주면)

○ 저소득층 자활사업 현황이 읍면별로 통일되지 않고 대상인원 또는 개소수로 기록되는등 가급적 통일을 바람.

⑫ 면 개발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춘양면)

○ 면 개발 자문위원회의을 본기에 1회씩 개최토록 조례에 정해놓고 참석수당은 없는데 군 단위 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준으로 지급할수 있도록 시정조치 할 것.

⑬ 필수요원 확충 (춘양면)

○ 면사무소 특성상 위생원은 필수요원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히 확충할 것.

⑭ 쓰레기 봉투 유원지 판매홍보 (이양면)

○ 유원지에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 홍보하여 쓰레기 처리 및 이용객들의 쓰레기 위생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

⑮ 공사 불법 하도급 업체 지도감독 철저 (청풍면)

○ 공사 불법 하도급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

⑯ 용자금 회수 철저 (동북면)

○ 농업 경영인 관리실태 조사 과정에서 기술센터와 읍면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용자금 회수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⑰ 반상회 운영관리철저 (동북면)

- 형식적인 반상회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민간의 사항 수렴에 관심을 가질 것.

⑱ 군비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 (남면)

- 녹차 재배 목적으로 군비 보조를 받고 현지 과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고 채산성등을 들어 보조금 지급 목적에 위배되니 자금 회수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⑲ 관정 공동운영 관리 (동북면)

- 관정 관리를 개인이 하지말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관리토록 지도 할 것.

⑳ 청소차 운전수, 미화요원 충원 (동면)

- 청소차 운전수가 없으며 미화요원 마저도 정년퇴직을 하였음에도 충원에 소홀하고있어 생활민원의 우려가 있으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㉑ 읍면 공동

- 가로등 보수업무를 면으로 이관하여 가로등 보수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조치할 것.
- 각 면 청사 회의실에 냉난방 및 음향기기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사치센터로서 주민참여에 관심을 가질 것.
- 군 발주 공사의 면 보조감독 일지를 작성토록 할 것.